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60호, 2010. 4. 1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성폭력 피해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을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4일

국무총리 김항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263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 및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4.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제3조(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합산하여야 할 항목 및 빼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합산하여야 할 항목: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 보험회사의 자본 충실에 기여하거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填)할 수 있는 것
2. 빼야 할 항목: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6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바. 입양자(入養者)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 사. 출양자(出養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및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보험종목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보험
5. 유리보험
6. 동물보험
7. 원자력보험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허가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나.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다. 합작계약서(외국기업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바. 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 주식 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적은 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외국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나. 대한민국에서 외국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대표자”라 한다)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보험회사 본점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 전문 인력과 보험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2.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 2.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 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 4.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사업방법서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내용일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대주주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2. 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 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3. 대주주가 별표 1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 법, 금융 관계 법령이나 외국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 부터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 향상이나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보험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3. 보험계약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를 제때에 산출할 수 있을 것

4.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 제6조제5항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건을 확인한 결과 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한 내용을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또는 천재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 200억원
2.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200억원
3. 화재보험: 100억원
4.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150억원
5. 자동차보험: 200억원
6. 보증보험: 300억원
7. 재보험: 300억원
8. 책임보험: 100억원
9. 기술보험: 50억원
10. 권리보험: 50억원
11. 상해보험: 100억원
12. 질병보험: 100억원
13. 간병보험: 100억원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보험종목: 50억원

② 제1항제7호는 재보험을 전문(專業)으로 하려는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 중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 모집비율의 산정기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 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와 보험회사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③ 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겸영업무·부수업무의 구분계리)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계리의 세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공사채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 「산업발전법」

20. 「상호저축은행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선박투자회사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 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5. 「전자금융거래법」
3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 「주택법」
38.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가·허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 또는 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 2. 인가·허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 3. 인가·허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 ④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 2. 정직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법 제134조제1항제1호(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 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으로서 사임하거나 사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임원의 겸직 제한) ①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사외이사 선임 대상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보험회사

2.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보험회사

제21조의2(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보험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보험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보험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보험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보험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借入)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보험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정기사원총회일 현재 해당 보험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보험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보험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15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보험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2.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4. 제3호 외에 해당 보험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보험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가.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나. 해당 보험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

다. 해당 보험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제21조의3(감사위원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2. 상근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3.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22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2.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3.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4.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5.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6.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7. 재보험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③ 법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25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에 따라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명부
3. 사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입사청약서
4. 이사,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1. 현금 또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적금 및 부금
2. 국내에 예탁하거나 보관된 증권
3.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4. 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5. 미상각신계약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중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① 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위탁범위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법 제8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6.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 제3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결정 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2.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3.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1.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
2.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 ③ 보험대리점은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 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① 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한다)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각

각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③ 보험중개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생명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 2. 손해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 3. 제3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제36조(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 2.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③ 보험중개사는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3.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4.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 ④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등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①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는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89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을 증명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인보험중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3.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1.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2.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3.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⑧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회사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⑨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2.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환급금
3. 그 밖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방법 등 그 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를」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총액과 제8항에 따른 모집수수료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3.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서류
  4.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1.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3.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 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항
    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3.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4.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4.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2. 보험금 청구 단계

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3. 보험금 지급 단계: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적합성 원칙의 확인 내용 등) ① 법 제95조의3제1항에서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계약자의 연령

2. 월 소득 및 월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3. 보험가입의 목적

4. 변액보험계약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가입 여부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변액보험계약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③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법 제95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2.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

② 법 제95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
2.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3.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4. 해약환급금 예시
5.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6.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③ 법 제95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법 제83조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④ 법 제95조의4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2.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3.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4.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상품의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법 제9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 민간법인 또는 단체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보험계약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자가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5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2.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소속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위탁보험회사”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보험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중개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4. 위탁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당 개인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

자료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이버몰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용할 것

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

⑤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상법」 제639조에 따른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상법」 제639조에 따른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⑩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 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자필서명
2. 기명날인
3. 녹취

제4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자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2.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2.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지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⑤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47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①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2.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10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요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명백히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행위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이나 보험계약자의 이익, 그 밖에 건전한 모집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및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법 제10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시설용 부동산: 영업장(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험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연수시설, 임원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 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투자사업용 부동산: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② 법 제10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외국환 중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만 해당한다)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관한 거래로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된

조건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 시 신용위험을 거래 당사자 한쪽에게 전가(轉嫁)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3.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1.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 제5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6.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② 법 제106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 무규정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

2. 장외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구조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약정금액

③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을 총 자산의 100분의 15로 인한다.

④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300억원을 말한

다.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없다. 다만,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3.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이 경우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2.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  
리 기준에 따라 차입받는 행위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같은 법 제16조제  
2항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라.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는 경우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자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거나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보험료를 어음으로 수납하는 행위

5. 특정한 특별계정 자산으로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④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자산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06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제51조에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  
별계정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해당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  
료를 뺀 수익을 해당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  
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 내용

2. 자산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  
산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설정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한 대출업무의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유형)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3. 대출과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불정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4.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5.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법 제11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

래금액(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 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주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법 제1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을 이전하려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법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조건 등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금차입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연수·도서출판·금융리서치·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차량관리·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
1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
14.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또는 집합투자업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하는

## 업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하는 업무

19.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20.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하는 업무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외국에서 하는 사업(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③ 법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2.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할 것

3.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승인의 요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및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3. 주주현황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②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2. 자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외국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2. 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④ 제3항에 따른 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2항제2호의 서류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

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 ① 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나.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

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받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보험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다만,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하고, 배당보험계약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배당을 할 때 이익 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지분

2.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계약자지분 중 배당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적립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으로 배당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

④ 배당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우선 사용하여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보전한다.

⑤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①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별 자산 또는 손익의 구분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전체 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약별 평균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2.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험계약별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3.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보험계약별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배분 방식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공시사항)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협회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3명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부서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가. 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다.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라. 상호협정을 하려는 사유

마.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바.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

나.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다. 상호협정을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내용

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

나.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 발생시기

다. 상호협정을 폐지하려는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
-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제70조(정관변경의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6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초서류
-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절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4항의 제출서류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출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71조제2항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제128조의3 또는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71조제5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보험계리업자
2. 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보험계리업자
3. 대표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보험계리업자
4.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계리업자
5.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대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리업자
  - 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또는 문책
  - 나. 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 다. 법 제190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등록의 취소
  - 라.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관리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절차
2. 기초서류 작성·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의5(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법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연 2회 이상

제72조 및 제7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보고사항) 법 제1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
3. 법 제13장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조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5.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6.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였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제73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제재 사실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경고,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영업일 이상 게재
2.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취소: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및 해당 보험회사의 본점과 영업소에 7영업일 이상 게시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4.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금액·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5. 그 밖에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53조제4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각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 합병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4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재사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의결권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 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각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
  5. 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2. 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법」 제524조제1호의 기재사항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수 및 납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⑥ 해산의 결의, 보험계약 이전 및 해산·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3.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5.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협회회의 의장(이하 “협회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협회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협회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협회의 기능) 협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회장이 협회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제78조(협회의 운영) ① 협회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협회회 회의는 협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협회회장이 소집한다.
- ③ 협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회회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협회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협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회장이 정한다.

제79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법 제16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① 법 제16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
3.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4. 「선원법」 제98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8.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11.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항공보험계약
  12. 「낙시어선업법」 제17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에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 ② 법 제16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말한다.
- 제81조(출연 비율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개별 손해보험회사(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는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법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가 있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비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만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16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출연하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아니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출연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은 연도별로 분할하여 출연하되, 연간 출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출연금 납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내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출연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출연금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자금 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기간에 따라 가산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 ⑦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출연금의 납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2조(지급보험금 등) ① 법 제1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이란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를 한 손해보험회사가 제8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하 “지급불능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보장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제80조제1항 각 호의 손해보험계약 중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액
  2. 제80조제1항 각 호의 손해보험계약 중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③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 신청기간, 보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납부로 인하여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고 보험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인하·조정할 수 있다.

제83조(자금차입 금융기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관리 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수행하는 신용정보업무
7.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제85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 개시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7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2. 임원 등 경영진을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
3.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및 자동차 기준가액의 정보 제공 업무
2.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3.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국내 경험통계 등의 부족으로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5.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은 3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5항에 따라 경험생명표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을 위하여 연 1회(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월 1회)에 한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보험계약 정보는 참

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검증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6조제1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 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89조(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 3.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질병의 종류 및 질병 발생자의 성(性)·연령·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진행·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 2.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관리실태에 관한 통계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적용에 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제91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6조제1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 제공정보, 제공 목적,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 ①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3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보험계리”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95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제96조(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① 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선임계리사는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력 및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손해사정사 고용의무) 법 제185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 ⑤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법 제18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
-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연수과정 및 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호(연수과정 및 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호(교육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4일부터, 제61조 및 별표 6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종전의 법 제8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중 등록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보험대리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보험대리점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보험증개사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계정자산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특별계정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보험자산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재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초서류 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3조(보험종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의 비용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같은 조 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의 날씨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겸영업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하고 있는 업무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험설계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람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험대리점 상호 사용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보험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보험중개사 상호 사용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보험안내자료 및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모집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광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자회사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회사가 제59조제1항제15호, 제16호, 제17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2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4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⑥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⑧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3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⑪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8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

| 구 분   | 요 건  |
|---|--|
|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br>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br>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

|   |  |
|---|--|
|   | <p>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
|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p>                                 | <p>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p> <p>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p>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p>          | <p>가. 허가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

|                                |  |
|--------------------------------|--|
|                                | <p>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p>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고

1.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위 표 제4호를 적용할 때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위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별표 2]

##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제11조제2항 관련)

| 구 분              | 요 건   |
|------------------|---|
|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p>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

|                                       |   |
|---------------------------------------|---|
|                                       |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
|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p>        |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p>         | <p>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p> <p>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p>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p>               | <p>가. 승인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p>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p> | <p>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p>   |

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비고

1. 위 표 제4호를 적용할 때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별표 3]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 구분      | 등록요건   |
|---------|--|
| 생명보험설계사 |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다.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p> <p>라.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p> |
| 손해보험설계사 |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p>   |

|         |  |
|---------|--|
|         | <p>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다.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p> <p>라.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p>  |
| 제3보험설계사 |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다.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p> <p>라.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p> |

비고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6개월로 한다.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 구분      |             | 등록요건  |
|---------|-------------|---|
| 개인보험대리점 | 생명보험<br>대리점 |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p> |
|         | 손해보험<br>대리점 |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p> |

|         |             |  |
|---------|-------------|--|
|         | 제3보험<br>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br>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법인보험대리점 | 생명보험<br>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br>가.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br>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
|         | 손해보험<br>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br>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br>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
|         | 제3보험<br>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br>가.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br>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

비고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6개월로 한다.

### 3.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 구분      |             | 등록요건  |
|---------|-------------|---|
| 개인보험중개사 | 생명보험<br>중개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br>나.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br>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 손해보험<br>중개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br>나.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br>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제3보험<br>중개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br>나.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br>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법인보험중개사 | 생명보험<br>중개사 |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생명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         | 손해보험<br>중개사 |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손해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         | 제3보험<br>중개사 |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제3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비고

개인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 또는 시험 합격 후 2년으로 한다.

## [별표 4]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분       | 교육기준   |
|----------|--|
| 1. 교육 과목 | 가.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br>나.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br>다.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br>라.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보험중개사 및 별표 3 제1호라목 의 보험설계사만 해당한다) |
| 2. 교육 기관 | 보험회사,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 3.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 4.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교육 시간을 5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 [별표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

## 1. 제1단계: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가. 개인저축성 보험<br>1) 개인연금<br>2) 일반연금<br>3) 교육보험<br>4) 생사혼합보험<br>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br>나. 신용생명보험 | 가. 개인연금<br>나. 장기저축성 보험<br>다. 화재보험(주택)<br>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한다)<br>마. 종합보험<br>바. 신용손해보험 |

## 2. 제2단계: 2005년 4월 1일 이후(보험기간 만료 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년 10월 1일 이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
| 가. 제1단계 허용상품<br>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 | 가. 제1단계 허용상품<br>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 |

## [별표 6]

##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 구분                   | 신고대상  |
|----------------------|---|
| 1. 공통                | <p>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p> <p>나.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li> <li>2)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li> </ol>   |
| 2. 사업방법서             | <p>특정 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여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고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되는 경우</p>   |
| 3. 보험약관              | <p>가.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p> <p>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p> <p>라. 보험기간 중에 위험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p>   |
|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p>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의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지 않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p> <p>나. 순보험요율을 성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지 않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장하는 모든 위험이 하나의 위험률로 산출된 경우</li> <li>2)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보험에서 주피보험자(피보험자 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의 연령에 따라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말한다)의 연령이 결정되는 경우</li> <li>3) 연령별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여 대표연령을 적용한 경우</li> <li>4) 단체보험에서 대상 단체 단위별로 위험률이 산출되었거나 피보험단체의 평균보험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한 경우</li> <li>5) 제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상해보험계약의 경우</li> </ol> <p>다. 장래 현금흐름과 예상이익을 사용하는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기간이 3년 이하인 보험계약</li> <li>2)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li> </ol> |

|       |   |
|-------|---|
|       | <p>라. 위험률의 특성 외의 이유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음(陰)의 값을 가지는 경우</p> <p>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p> <p>1)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구분단위를 도입하는 경우</p> <p>2) 교통법규 위반경력 평가의 대상항목 및 대상기간 등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p> |
| 5. 기타 | 금융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의 신고 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별표 7]

##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 구분       | 작성·변경 원칙  |
|----------|---|
| 1. 공통    |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경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 2. 사업방법서 | <p>가.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p> <p>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초래하는 내용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p> <p>다. 보험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 또는 의무를 확대하거나 보험회사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p> <p>라. 보험상품의 명칭은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것</p> <p>마. 보험요율을 할인·할증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을 것</p>  |
| 3. 보험약관  | <p>가.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명확하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p> <p>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않을 것</p> <p>다.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지 않을 것</p> <p>라.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전부손해에 대한 보험금(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 시작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은 해약환급금 이상일 것</p> <p>마. 보험금의 지급 사유 및 지급보험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p> <p>바. 적용이자율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자율, 이자율의 계산방법 및 공시방법을 분명하게 적을 것</p> |

|                      |  |
|----------------------|--|
|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는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br>나.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적립할 것 |
| 5. 기타                | 기초서류의 작성·변경 원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별표 8]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험종목 추가 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3.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적 시설 유지의 예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4.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심사
6.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7.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및 부수업무의 신고내용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의 접수
9.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10.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금액의 결정
1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사유 보고의 접수
1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의 잔무를 처리할 자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
13.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의 통지 및 업무정지의 통지
14.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이 금융위원회에 알리는 사항의 접수
15.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의 통지 및 업무정지의 통지
16.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에 대한 영업보증금 예탁 등의 조치
17.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알리는 사항의 접수
18.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19. 법 제107조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승인 여부의 심사
20.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1. 법 제111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
22.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3.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24.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신고의 접수
25. 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회사에 관한 서류의 접수
26. 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접수
27.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28. 법 제124조제6항에 따른 거짓이거나 사실과 다른 공시의 중단이나 시정조치 등의 요구

29. 법 제1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호협정 변경신고의 접수
30. 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보고의 접수
3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기초서류 작성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32.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의 요구
33.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34.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35. 법 제133조제1항(법 제17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36. 법 제1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산 처분 허가 여부의 심사
37. 법 제155조에 따른 정리계획서의 접수
38.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39. 법 제160조(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자산의 공탁 및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
40. 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자산의 관리 명령
41. 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42.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의 요구
43. 법 제164조에 따른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44.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확인
45.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자금 차입 승인 여부의 심사
46. 법 제176조제4항에 따른 순보험요율의 신고 수리
47. 법 제184조제2항에 따른 기초서류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한 선임계리사 보고의 접수
48. 법 제184조제6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에 대한 의견 제출 지시
49. 법 제191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자산 예탁 등의 조치의 요구
50. 법 제193조에 따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의 요구
51.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의 공고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52. 법 제195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고
5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55. 제22조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56. 제23조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 통보의 접수
57. 제66조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58. 제71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의 접수
59. 제71조의2에 따른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60. 제87조제3항에 따른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검증보고서 제출의 접수
61. 제92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62. 제97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6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업무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계약체결에 대한 확인 의무 구체화(안 제42조의5 신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고, 중복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총 리 령

##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월 24일**

**국 무 총 리 인**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 목적의 도면·사진 등 보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허가 사항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업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3. 설치하려는 국내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최근 3년간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예비허가의 신청 등)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 취지
2. 신청인, 신청일, 신청 보험종목의 범위 등 주요 신청내용
3. 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예비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疏明)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힌 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 조정을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또는 신청인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시장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본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비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 다만, 자본금·기금 또는 영업기금과 인력,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사업의 계획 및 실행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예비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 예비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영업기금의 납입) 영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외국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의 방법을 적은 서류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3. 법 제18조·제19조 및 「상법」 제232조·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가 끝난 후 3월 14일까지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영업보증금(이하 이 조에서 “최저영업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100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영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가 위탁(預託)한 영업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가 위탁한 영업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①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험중개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배분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영업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한다.

⑦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배분을 위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시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은 해당 보험중개사가 부담한다.

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

2.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별로 해당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각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회사별 수수료·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

제25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및 예탁방법
2.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 및 가입금액과 주요 내용
3.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

제26조(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영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2.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
3. 보험계약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금 처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로 인하여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4.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얻은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전달한다는 내용
5. 보험계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거나 광고하고,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적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설계사: 6천원
2.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 등을 적용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②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대차대조표에의 계상)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63조 및 이 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①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②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전(補填)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남은 손실을 우선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후,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을 주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으로 계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주주지분의 결손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3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22조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협정서
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34조(검사의 증표)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3.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6조(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이전계약서
2. 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3. 이전할 보험계약의 종류·건수·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
4.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을 적은 서류
5. 이전할 재산의 총액과 재산 종류별 수량 및 가액(價額)을 적은 서류
6.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건수·금액 및 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금액·계약자수 및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적은 서류
7. 법 제141조에 따른 계약 이전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서류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7조(해산 결의·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의 결의·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이 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2. 해산·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제38조(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①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산인 해임의 청구) ① 법 제156조제4항에 따른 주주 또는 사원이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전체 사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손해보험협회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 계정의 재무제표
2. 필요 자금에 대한 추정 근거
3.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초서류”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5.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법 제181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임: 선임 후 보고
2. 해임: 해임 전 신고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제2차 시험 과목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시험 응시자가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0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이력서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재물손해사정사 시험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및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제55조(준용규정)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해당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관계 법인(해당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제6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제1항, 제55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13년도에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손해사정사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 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재물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와 제2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재물손해사정사
-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사람: 차량손해사정사
-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신체손해사정사
- 4.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종합손해사정사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제46조제4항 관련)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1) 경제학원론                                 | 1) 계리리스크관리     |
| 2) 보험수학                                  | 2) 보험수리학       |
| 3) 영어                                    | 3) 연금수리학       |
| 4)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br>급여 보장법 | 4) 계리모형론       |
| 5) 회계원리                                  | 5)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 [별표 1의2]

##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6항 관련)

| 구 분           | 내 용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토플<br>(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               |  | CBT: 197점 이상 |
|               |  | IBT: 71점 이상  |
| 토익<br>(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 텡스<br>(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 [별표 2]

##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제53조제1항 관련)

| 종류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재물 | 1) 보험업법<br>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br>3) 손해사정이론<br>4) 영어 | 1)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br>2)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br>3) 회계원리                           |
| 차량 | 1) 보험업법<br>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br>3) 손해사정이론          | 1)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br>2)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 신체 | 1) 보험업법<br>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br>3) 손해사정이론          | 1)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br>2) 의학이론<br>3)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br>4)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별지 제1호서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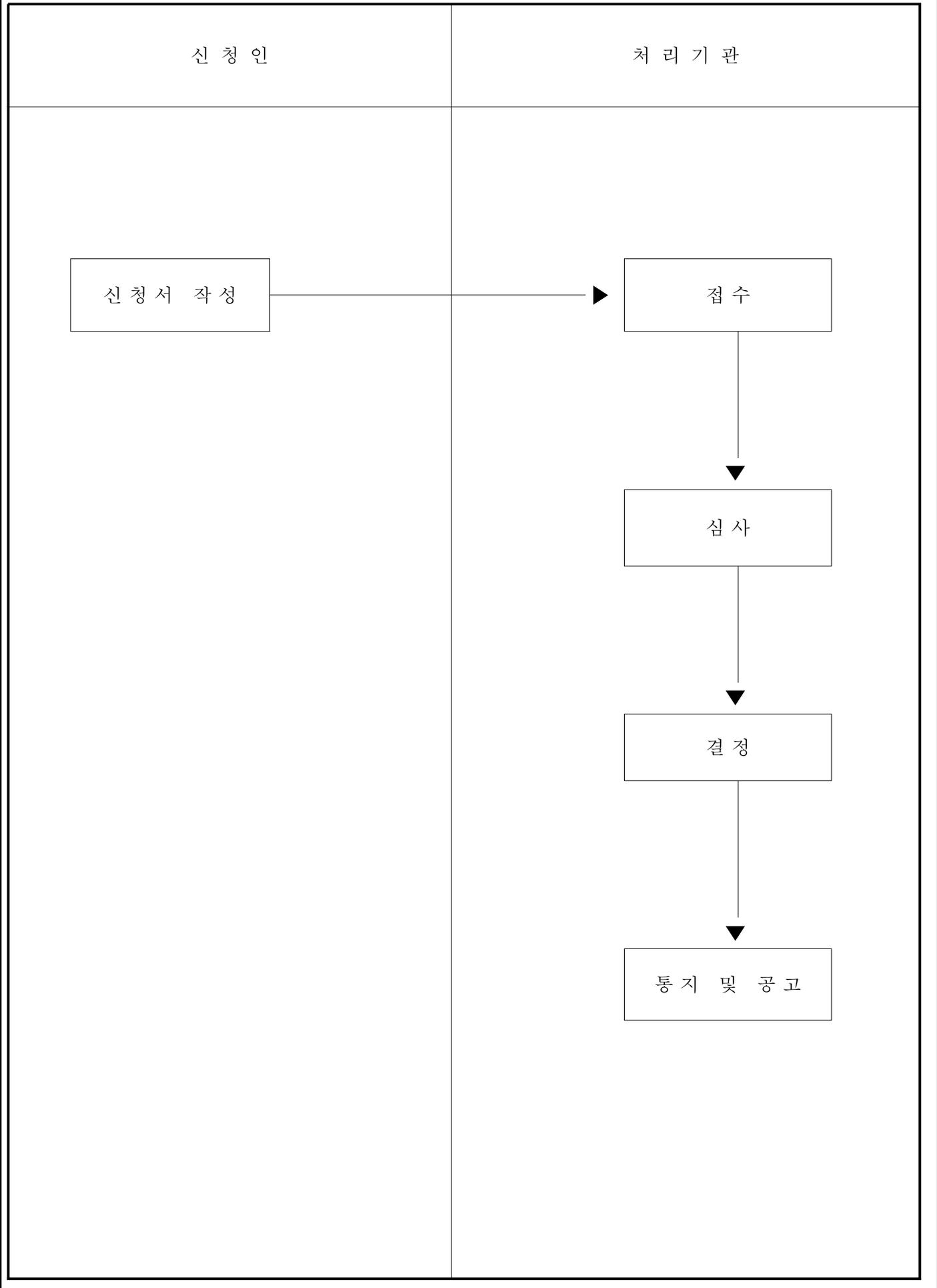
(앞 쪽)

|   |            |        |
|---|------------|--------|
| 예비허가신청서(주식회사·상호회사)  |            | 처리기간   |
|   |            | 3개월    |
| 신청내용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자본금(기금)    |        |
|   | 상호         |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보험업의 종류    |        |
| 「보험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수수료    |
|   |            | 없음     |
| 년 월 일<br>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br>금융위원회 귀중   |            |        |
| 첨부서류<br>1. 정관<br>2. 발기인회의 의사록<br>3.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br>4. 사업방법서<br>5. 보험업 경영을 위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계획서<br>6. 주요 출자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br>7.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br>8.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 시설 및 전산설비계획, 상품개발계획 등)<br>9.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br>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m<sup>2</su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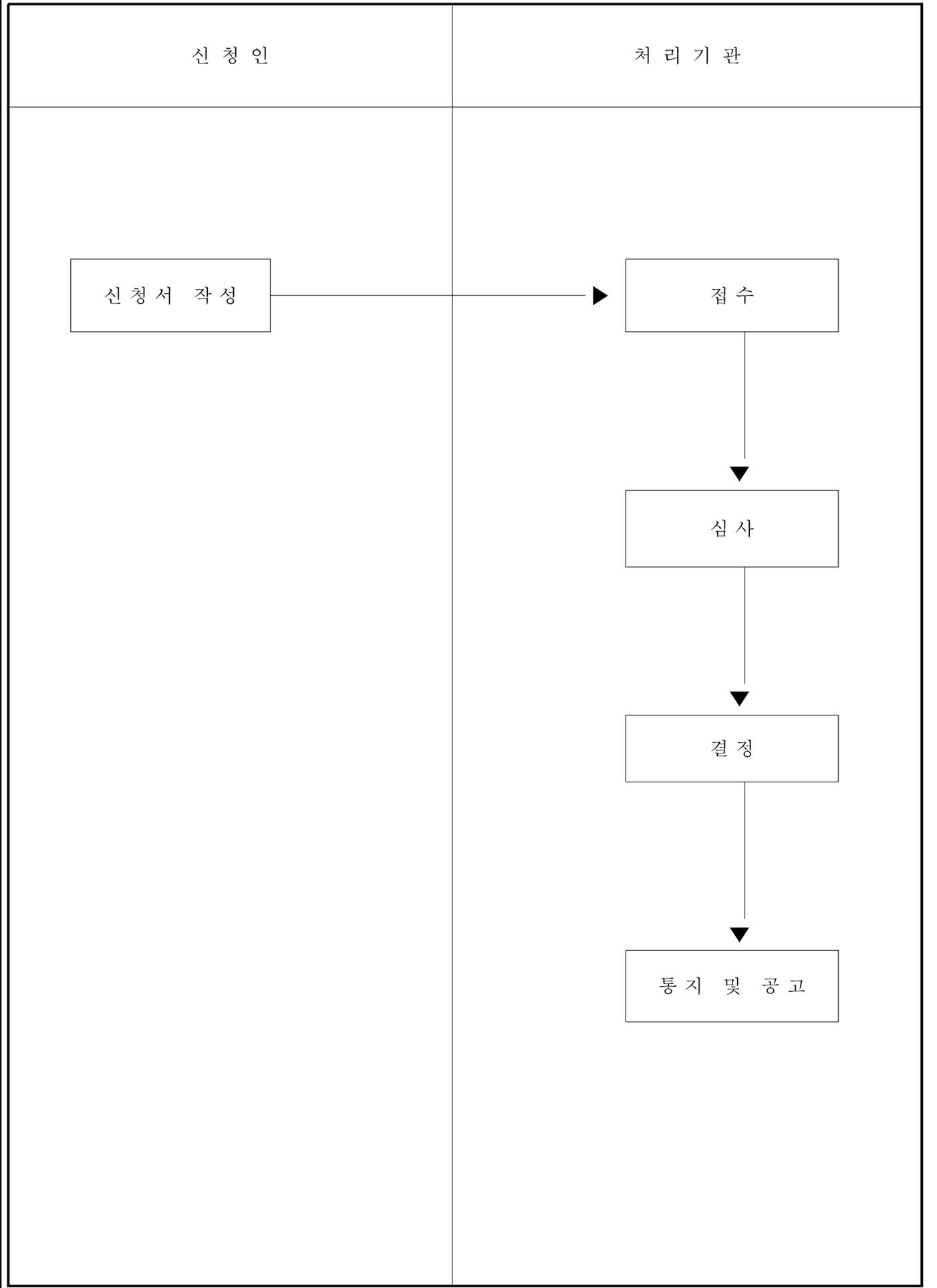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 겸영업무신고서

|                  |         |  |        |  |
|------------------|---------|--|--------|--|
| 신<br>고<br>내<br>용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자본금(기금) |  |        |  |
|                  | 상호      |  |        |  |
|                  | 본점 소재지  |  |        |  |
|                  | 보험업의 종류 |  |        |  |

「보험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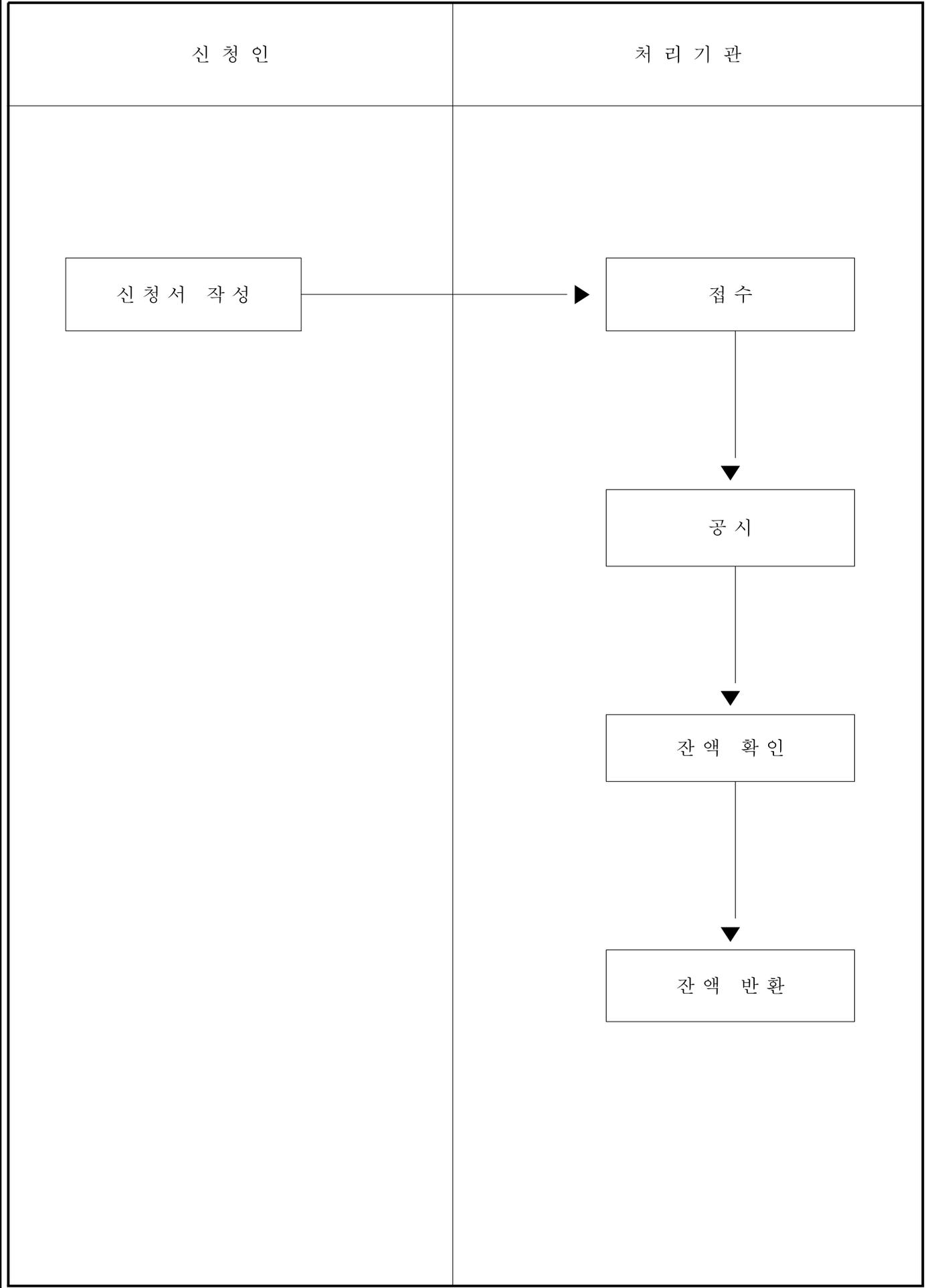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m<sup>2</su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2호서식]

검 사 원 증

소 속:  
직 위:  
성 명: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라 위 사람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를 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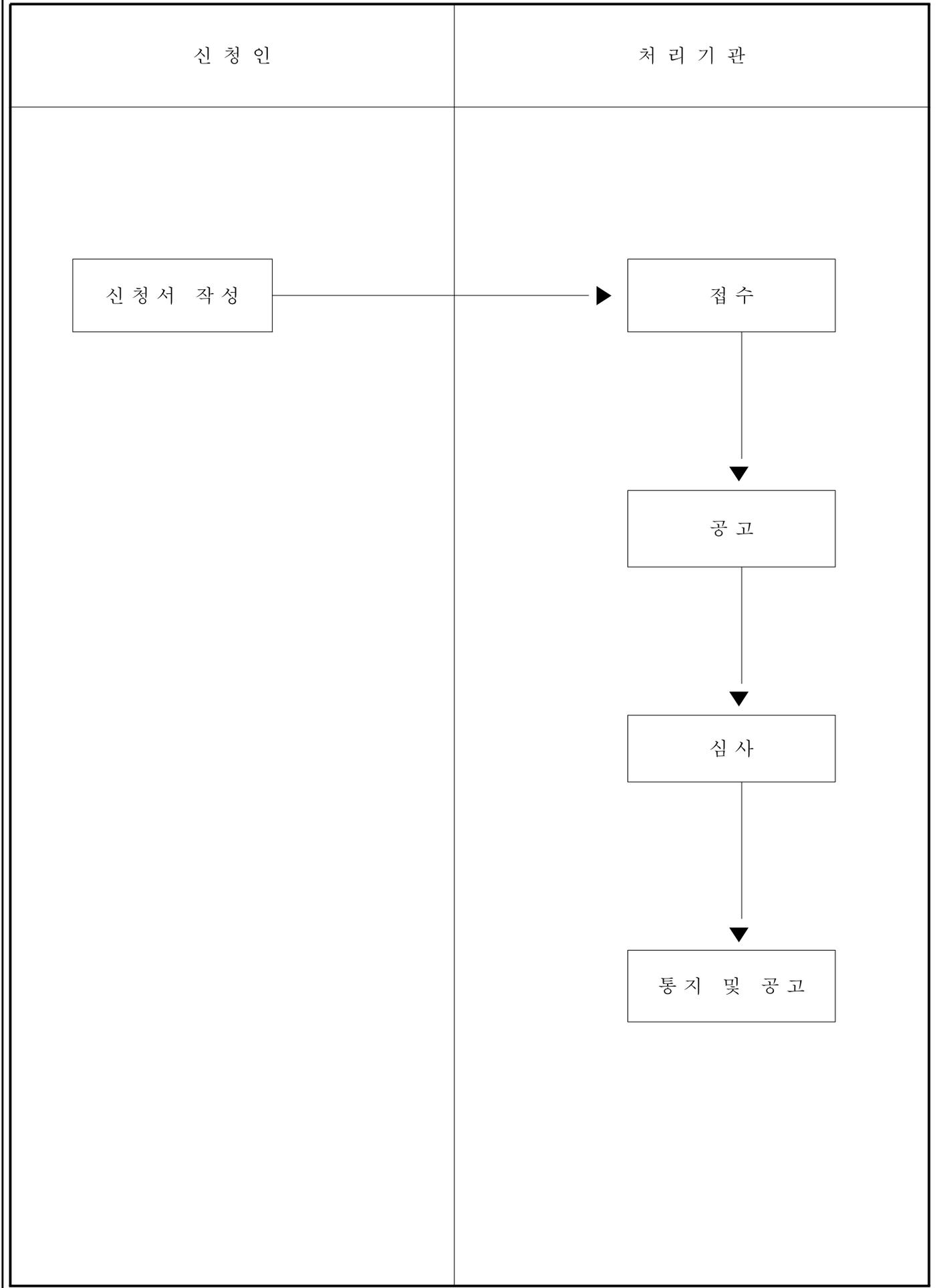
금융감독원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m<sup>2</su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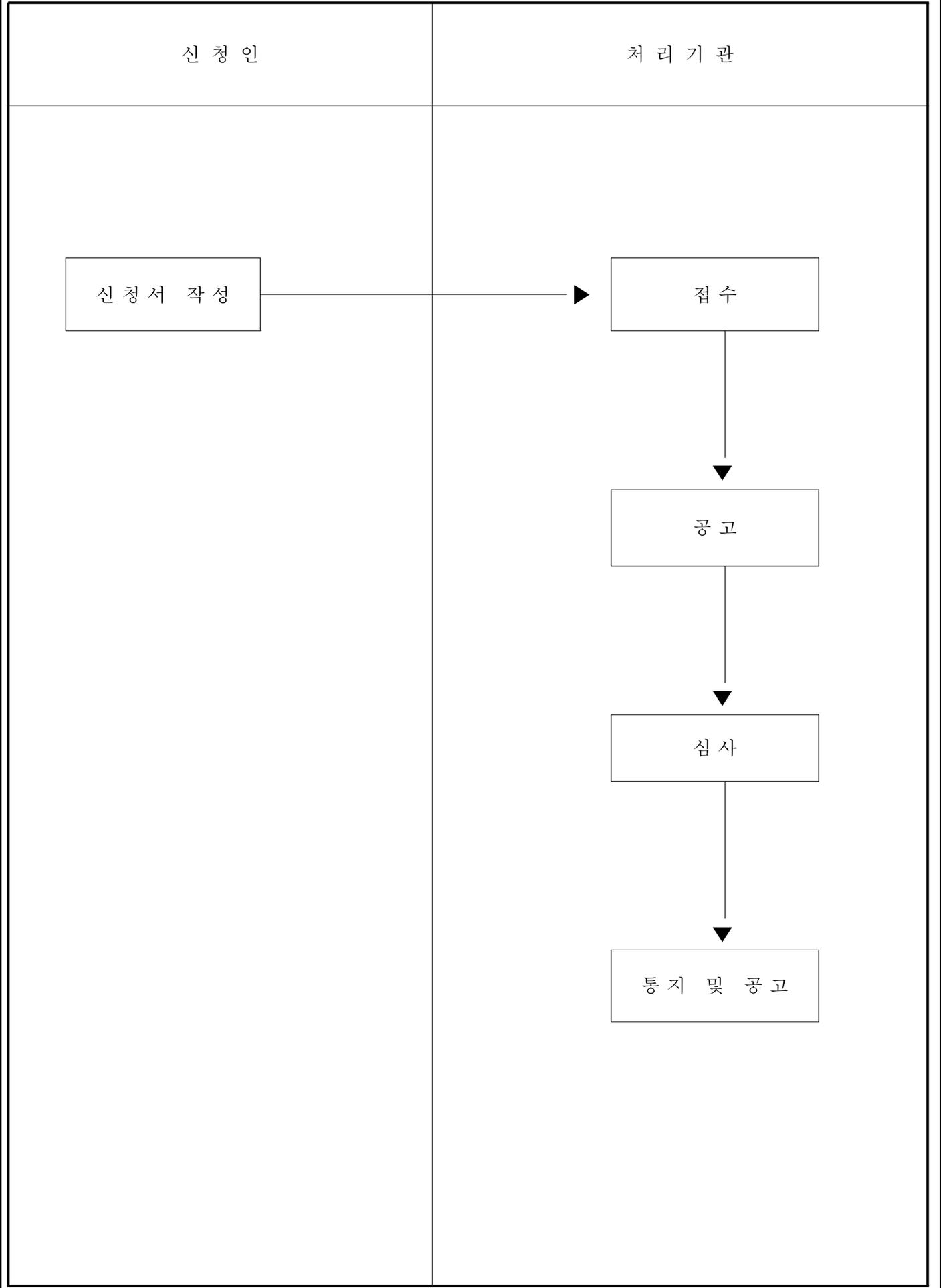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   |          |                  |     |     |
|--------------------|--------|-------|---|----------|------------------|-----|-----|
|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        |       |   |          | 처리기간             |     |     |
|                    |        |       |   |          | 30일              |     |     |
| 신<br>청<br>인        | 성<br>명 | 한글    |   | 자격<br>구분 | 주민등록번호           |     |     |
|                    |        | 한문    |   |          |                  |     |     |
|                    |        | 영문    |   |          |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제2차<br>시험합격일       |        | 년     | 월 | 일        | 제2차 시험<br>합격증서번호 | 제 호 |     |
| 실무수습               |        | 기 관 명 |   |          | 기 간              |     |     |
|                    |        |       |   |          | 년                | 월   | 일부터 |
|                    |        |       |   |          | 년                | 월   | 일까지 |
| 수행하는 업무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보험업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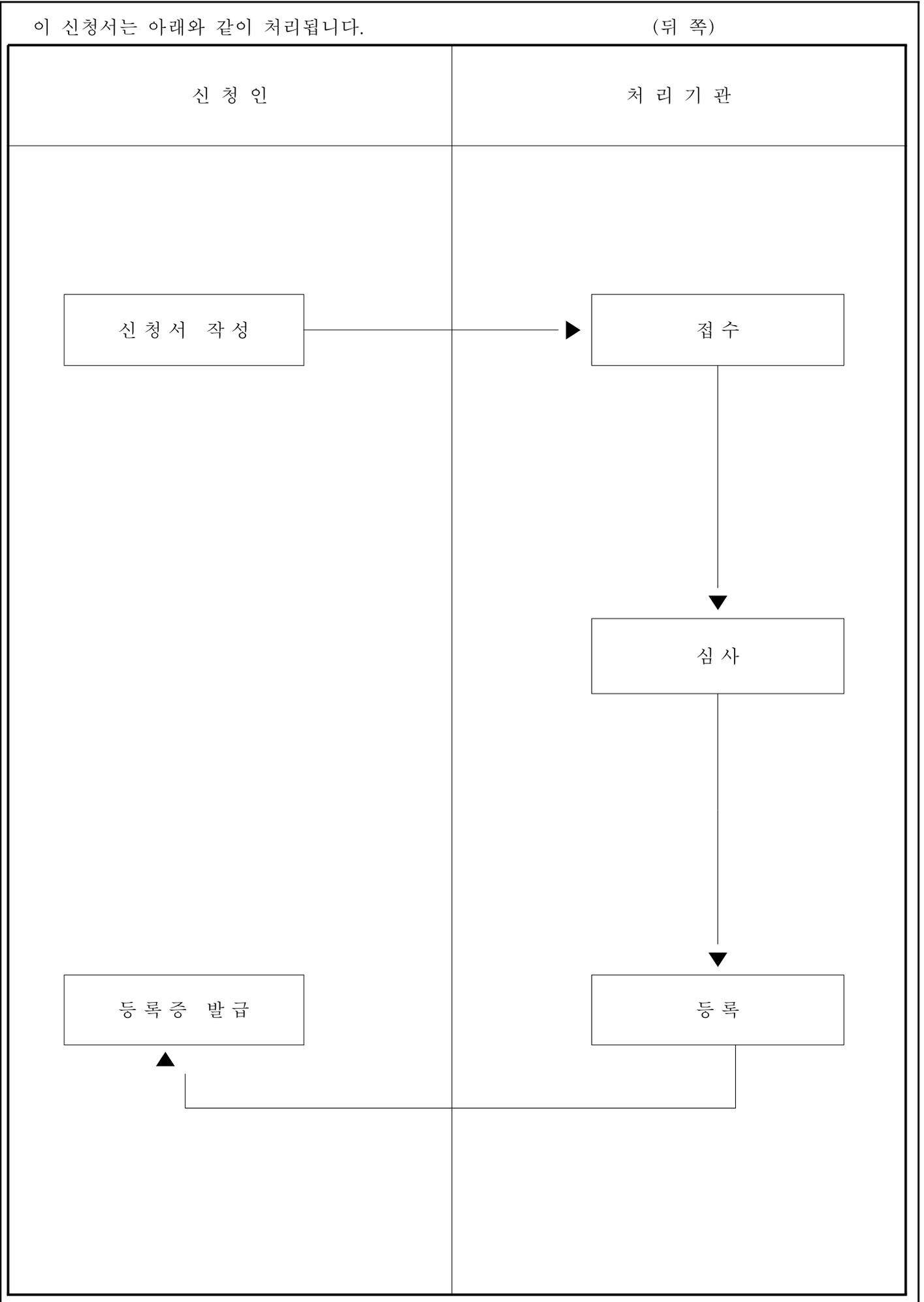
금융감독원장 귀중

첨부서류

1. 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개정이유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경영업무의 인가를 신고로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합리화(안 제19조)

- 1)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이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2배로 정해져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을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2배 수준에서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 중 큰 금액 수준으로 줄임.

나. 보험계리사 시험 제도 개편(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 1)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 양성을 위해서는 보험계리사 시험을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2) 보험계리사 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회계원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목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 과목에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과목 등을 추가하면서 과목별 부분 합격제도 등을 도입함.

다. 손해사정사의 종류 변경(안 제52조, 안 제53조, 안 제53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안 별표 2)

- 1) 현행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2) 손해사정사의 종류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부 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